

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연장 발령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, 하동군 고시 제2020-1500호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연장 시행합니다.

2020년 12월 4일

하 동 군 수

1.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사항

- ※ 하동군 행정명령의 변경사항(11.27.~) 외에는 경남도 행정명령(11.26.~) ‘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등 집합제한 사항’ 을 적용

가. 다중이용시설

- ① (중점·일반관리시설) 집합금지 및 이용인원 제한 확대,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
 - 적용대상

구분	시설 특성별 방역수칙(2단계)
유흥시설 3종 (유흥, 단란, 콜라텍)	▶ 집합금지
노래연습장	▶ 21시 이후 운영중단 ▶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▶ 음식 섭취 금지 ▶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, 30분 후 사용
식당·카페 (일반·휴게음식점, 제과점영업)	▶ 카페는 포장 배달만 허용 ▶ 음식점은 21시이후로 포장 배달만 허용 ▶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(50㎡ 이상)
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	▶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▶ 21시 이후 운영중단 ▶ 노래 음식 제공 금지

실내체육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1시 이후 운영중단 ▶ 음식 섭취 금지 ▶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▶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
결혼식장	▶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
장례식장	▶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
목욕장업	▶ 음식 섭취 금지
오락실	▶ 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
PC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음식 섭취 금지(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시 제외) ▶ 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
학원 (교습소 포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음식 섭취 금지 ▶ ①시설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▶ ②시설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※ ①안 ②안 중 선택 ▶ 휴원명령(11.19(목) ~ 11.22(일))
스터디카페 (독서실 포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음식 섭취 금지 ▶ 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▶ 단체룸은 50%로 인원제한, 21시이후 운영중단
이·미용업	▶ 시설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
상점·마트	▶ 마스크 착용, 환기·소독(300㎡ 이상)
기타시설	▶ 모든 실내 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

※ 1단계 기본 방역 수칙(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 등) 의무화는 필수 포함

나. 일상 및 사회·경제적 활동

- ① (마스크 착용 의무화) 실내전체,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(집회, 시위, 스포츠 관람 등)

- ② (모임·행사) 100인이상 모임·행사 금지
- ③ (교통시설) 교통수단(차량)내 음식 섭취 금지
- ④ (등교) 밀집도 1/3원칙(고등학교는 2/3)
※ 학교별 교육청과 협의 추진
- ⑤ (종교활동) 정규예배, 미사, 법회, 시일식 등 좌석수의 20%이내로 인원참여, 모임·식사 금지

2. 처분당사자

- 하동군내 중점·일반관리시설 등 책임자·종사자 및 이용자
- 하동군내 100인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임·행사 주최·주관·참석자
- 하동군 소재 모든 종교시설

3. 처분내용 : 방역수칙 의무화

4. 처분근거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의2, 2의3, 2의4

5. 처분사유

하동군 내에서의 지역감염 사례 발생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 위험성이 있고,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조치 필요

6. 처분기간 : 2020. 12. 05.(토) 00:00 ~ 2020. 12. 11(금) 24:00

7.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0. 12. 05.(토) 0시부터

8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9.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

- 1) 핵심 방역수칙 준수 위반시 시설의 관리·운영자에 300만원 이하,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2)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에 의한 집합금지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·조사·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. 끝.